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포장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김 재 성\*  
박 세 훈\*\*

- 
- I. 서 론
  - II.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포장의 계약적합성의 관계
  - III. 포장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국제규칙
  - IV. 포장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 V. 결 론
- 

주제어 : 포장의 계약적합성, 매도인의 의무, 포장조건

### I. 서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의 의무이행과정에서 매도인 측면에서 자주

---

\* 주 저자,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겸임교수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부 겸임교수

발생하는 계약위반행위는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이다.<sup>1)</sup> 즉, 이러한 경우의 핵심적 문제는 계약당사자간의 물품의 품질에 관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품의 품질적합성은 품질에 관하여 한정되지 않고 포장의 적합성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물품의 품질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가 용기나 포장에 까지 확대될 수 있냐는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 칭함) 제35조 제1항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 품질 및 명세뿐만 아니라 용기나 포장도 계약에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CC(Uniform Commercial Code) 제2편 제314조 제2항 제e호에서 “물품을 명시적 합의에 요구에 따라 적절한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장은 매도인의 계약적합성의 의무는 포장까지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품 자체의 계약적합성 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도 계약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국제물품매매에서 포장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상무론적 효용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연구로는 먼저 강정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에 관한 각국의 판결 및 중재사례를 살펴보았고<sup>2)</sup>, 오원석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CISG상의 매도인의 계약적합성 물품인도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고 여러 법규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특정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유의점이 무엇 인지를 연구하였고,<sup>3)</sup> 이우영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CISG와 UCC의 계약적합성의 충족조건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하였고<sup>4)</sup>, 마지막으로 허광욱의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1)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 제35조 제1항.

2)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경제법연구, 제10권 1호, 2010.

3) 오원석·이병문,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2008.

에서 CISG에서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기초적 법리를 고찰하였다<sup>5)</sup>.

전술하였듯이 기존 연구는 대부분 CISG관점에서 여타 법규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하여 비교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기존의 논문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본 논문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를 포장의 적합성까지 확장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CISG를 중심으로 미국의 UCC, 영국의 SGA 및 운송 및 보험관련 규칙을 비교하였고, 본 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포장의 계약적합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제무역의 이행과정에서 포장과 관련된 운송규칙, 보험규칙, Incoterms® 2010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계약적합성 측면에서 포장에 관한 유의점을 명시적 측면, 묵시적 측면 그리고 실무상 포장화물 관리의 유의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II.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포장의 계약적합성의 관계

### 1.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의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분쟁은 “물품의 상태”에 관한 “사실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sup>6)</sup>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의 수량, 명세, 품질 나아가 포장 및 용기가 계약 체결시 의도했던 물품인가 아닌가에 관한 사실의 문제이다.

CISG에서 계약적합성은 물품 그 자체가 계약에 적합한 물리적 계약적합성의 경우<sup>7)</sup>와 물품이 제3자의 클레임이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적 계약적합성<sup>8)</sup>

4) 이우영·이양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4권, 2009.

5) 허광욱,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5호, 2005.

6)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252.

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계약적합성은 다시 주관적 계약적합성과 객관적 계약적합성으로 나눌 수 있다.<sup>9)</sup> 즉, 광의의 의미의 계약적합성을 규정하고 있다.<sup>10)</sup>

물리적 계약적합성에서 전자는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가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일치하는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주관적 계약적합성은 계약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사자 쌍방이 전제로 합의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계약체결 당사자간에 약정한 성질을 갖지 않아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의 계약목적이 하자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된다. 반면에 후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 사용방법에 적합, 특정목적에 적합, 견본품 또는 모형에 일치하는 품질, 통상적인 방법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되어 있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계약적합성을 채택하고 있다. CISG에서는 주관적 계약적합성과 객관적 계약적합성 개념을 복합된 질충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개념을 물품의 품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종류와 포장 등을 포괄하는 통일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권리적 계약적합성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의 클레임이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그 의미는 매수인이 제3자 또는 클레임이 부가된 물품을 인수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국내법에서는 계약적합성에 관한 문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UCC에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담보(warranty)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와<sup>12)</sup>, 판매적격품질에 관한 묵시담보

7) CISG Art. 35.

8) CISG Art. 41-42.

9)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p. 335 참조.

10) 강정혜, 전계논문, p. 240.

11) CISG Art. 41.

12) 명시적 담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물품에 관련되고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사실의 확인 또는 약속은 물품이 그 확인 또는 약속에 일치하는 경우, 계약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le quality)<sup>13)</sup> 및 특정목적적합성에 관한 묵시 담보(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sup>14)</sup>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The Sale of Good (1979); 이하 SGA라 칭함)은 당사자간의 명시적 약정은 일반계약법에 준거되지만 물품의 품질과 계약적합성에 관해서는 묵시적 “조건”(conditions)과 “담보”(warranties) 조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sup>15)16)</sup>

담보는 목적물에 관한 합의로서 계약의 주목적에 부수하는 것으로 그 위반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뿐 물품거절권 혹은 계약이행거부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우리나라 민법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관한 CISG와 같은 명시적 조문은 없다. 유사한 규정은 민법 제569조와 제582조에서 결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규정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CISG에서 계약위반의 개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18)</sup> <표-1>에서는 국제규칙과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하여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물품거래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은 매매계약체결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대로 물품이 인도되고, 그러한 물품의 인도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의 일부를 이루는 일체의 물품명세는 물품이 그 명세에 일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일체의 견본 또는 모형은 물품 전부가 그 견본에 일치할 경우이다(UCC Art. 2-313).

13) 판매적격품질조건에 관한 묵시적 담보는 매도인이 그 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일 경우에 당해 계약에서 묵시된다는 것이다(UCC Art 2-314).

14) 특정목적적합성에 관한 묵시담보는 계약물품의 사용목적을 특정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사용목적에 충족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UCC. Art. 2-315).

15) SGA Art. 11(3)

16) SGA에서 “계약상의 약속, 즉 조항이 계약요소 혹은 본질적인 것은 조건이며, 그 밖의 부수적인 것은 담보라고 한다(허광욱, 전계논문, pp. 172-173).

17) SGA Art. 61.

18) 강정혜, 전계논문 p. 241.

〈표-1〉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규정 비교

규범	주요 내용
CISG	물품 계약적합성을 물리적·권리적 계약적합성으로 나누어 규정
UCC	담보(warranties)를 명시적 담보와 묵시적담보로 규정
SGA	계약의 조건이 본질적인 것은 조건(conditions)이고 그 밖의 부수적인 것은 담보(warranties)라고 규정
한국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으로 나누어서 규정

## 2. 품질의 계약적합성 의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측면에서 계약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물품의 취득에 있다면 품질의 계약적합성은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역거래는 선물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시 약정한 물품의 품질과 실제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품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약정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계약시 계약당사자들이 품질의 계약적합성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품질결정방법, 품질결정시기, 증명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결정방법은 견본매매(sale by sample)<sup>19)</sup>,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sup>20)</sup>,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sup>21)</sup>,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sup>22)</sup>,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sup>23)</sup>,

19) 견본매매는 매매계약시 견본을 받고 이와 동질의 물품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한 품질조건으로 견본의 종류에는 견본의 제시 당사자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견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매수인견본, 매도인의 요청에 의해서 매수인이 보내는 대응견본 등이 있다.

20) 점검매매는 물품의 소재지에서 직접 점검하고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현물상환도지급방식(COD: cash on delivery) 등이 있다.

21) 표준품매매는 농산물 거래에서 일정한 표준품을 제시하고 이와 유사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규격매매(sale by grade)<sup>24)</sup> 등이 있다.<sup>25)</sup> 둘째, 품질 결정시기는 선적시를 기준으로 하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와 양륙시를 기준으로 하는 양륙지 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로 나눌 수 있다. 품질결정시기와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sup>26)</sup> 만일 당사자간에 선적시기에 관한 당사자간에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목시적조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sup>27)</sup> 셋째, 품질의 증명방법은 매수인에 의하여 물품의 품질이 계약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품질의 증명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은 검사시기, 검사장소<sup>28)</sup>, 검사방법, 검사비용 및 검사인<sup>29)</sup> 등이다.<sup>30)</sup>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품질검사시 물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또한 그 결과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sup>31)</sup>

요컨대 품질의 계약적합성의무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 약정시 당사자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은 품질결정방

22) 상표매매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물품이어서 약정된 상표나 브랜드가 부착된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23) 명세서매매는 선박이나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제품의 구조, 규격, 성능 등을 기술한 명세서로 품질의 기준을 삼는다.

24) 규격매매는 물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규격을 획득하면 품질이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5)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삼영사, 2011, pp.115-118 참조.

26) 선적품질조건은 선적시에 물품의 품질이 계약시 물품의 품질과 일치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면책이 되고, 양륙품질조건은 양륙시 물품의 품질이 약정물품과 품질이 일치하면 매도인의 책임이 면책된다.

27) Incoterms의 E규칙이나 F규칙은 선적지품질조건으로 C규칙이나 D규칙은 양륙지품질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28)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장소가 물품검사장소가 된다. 단, 송부매매의 경우에는 목적지가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검사하는 장소가 된다. 만약 운송 중에 전송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도착지에서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지면 된다(허광욱, 상계논문, p.178).

29) 물품의 검사인은 매수인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 지거나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30) 전게서, p. 120.

31) 허광욱, 전계논문, p. 178.

법,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방법 등을 가능한 자세히 명시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클레임을 방지하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포장의 계약적합성과의 관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제공하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그리고 준거법상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적합성은 CISG에서는 매도인에게 물품의 품질, 수량 및 명세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까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sup>32)</sup> 이는 물품의 품질적합성 기준을 포장 및 용기까지 확대하여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포장이나 용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sup>33)</sup>

또한 CISG 제35조 2항 d호에서는 “물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sup>34)</sup>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적인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35)</sup>

부연하자면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포장이나 용기의 통상적 방법은 해당 물품과 위험이 비슷한 물품에 대한 통상적인 보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통상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보존 및 보호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아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sup>37)38)</sup>

---

32) 오원석·이병문, 전계논문 p. 6.

33) SGA의 제13조에서도 “물품의 포장은 물품의 명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물품의 포장이나 용기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에 적합한 것은 수출자의 의무이지만 비록 계약상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묵시적 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 이것을 묵시적 담보(implied warranty)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조영철, “무역물품의 계약적합성과 물품인도와 관련된 수출상의 의무에 관한 고찰”, 복지행정연구, 제20권, 2004, p. 201.).

35) 허광욱, 전계논문, p. 176.

36)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산화물과 같이 포장이 통상적이지 아닌 한 경우까지 포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존호놀드 저, 오원석 역, 전계서, p. 272.).



국제거래에서 매도인의 물품계약적합성 의무는 물품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포장 까지도 확대 될 수 있고, 포장은 당사자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거나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되면 된다.

이는 결국 매도인의 입장에서 물품의 인도시 포장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격지간에 운송이 필요하고 이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입통관절차 등을 요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포장은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포장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국제규칙

#### 1. Incoterms® 2010 규칙에서의 포장적합성

Incoterms® 2010 규칙<sup>39)</sup>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매도인의 의무를 A1에서 A10까지 규정하고 있고, 그 와 대별되는 매수인의 의무를 B1에서 B10까지 규정하고 있다. 개정 Incoterms® 2010 규칙의 이러한 내용은 INCOTERMS 2000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Incoterms® 2010 규칙에서 포장은 ①매매계약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물품의 포장, ②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하기 위한 물품의 포장, ③컨테이너나 기타의 운송수단안으로 포장된 물품의 적부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

37) 물품의 포장이나 용기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에 적합한 것은 수출자의 의무이지만 비록 계약상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묵시적 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 이것을 묵시적 담보(implied warranty)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조영철, 전계논문, p. 201.).

38) CISG에서는 포장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로서 일반적 규정을 정의하였지 포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는 당사자간에 명시적 합의나 묵시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9) Incoterms® 2010 규칙은 특히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위험과 비용에 관한 묵시적 기준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 규칙에서 포장은 ①과 ②의 양자만을 의미한다.<sup>40)</sup>

Incoterms® 2010 규칙에서 매도인의 포장적합성과 관련된 의무 규정은 A9에서 규정하고 있다. A9에서는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점검(checking)·포장(packing)·화인(marking)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9에서 매도인은 반드시 A4의 인도 의무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점검업무(품질, 용적, 중량, 수량점검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실무적으로 유의할 것은 매도인은 EXW규칙을 제외하고는 수출국 당국에 의하여 강제된 모든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 PSI)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거래에서 물품의 포장으로 운송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고 아울러 포장에는 적절한 화인이 있어야 한다.<sup>41)</sup>

요컨대 Incoterms® 2010 규칙에서 포장 및 화인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의 운송 및 취급에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A9에 대별되는 B9에서는 매수인의 물품의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9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수출국 당국에 의하여 강제된 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의 비용 부담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국제운송규칙에 따른 포장의 계약적합성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로부터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에는<sup>42)</sup> 물품은 운송과정과 목적지에서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넣어지거나 혹은 포장되어야 한다.<sup>43)</sup> 만약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

40) Incoterms® 2010 규칙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적부할 당사자의 의무는 다루지 아니하며, 따라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정두, Incoterms® 2010, 청목출판사, p.39).

41) Incoterms® 2010 A9.

42) 국제운송에 관한 다양한 운송규칙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해상운송에 관한 헤이그규칙, 최근에 개정된 복합운송에 관한 로테르담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3) 국제운송에 운송인은 화물의 요금은 화물의 무게, 부피 또는 가치에 따라 최고비용에서 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운송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주로 운송주선인에게 자신의 화물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의 방식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수출자

혹은 재발송 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그러한 운송과정과 새로운 목적지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적합한 방식으로 넣어지거나 포장되어야 한다.<sup>44)45)</sup> 이에 수출자가 운송이나 취급에 부적합한 포장을 하였다면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을 거부당하거나 화물의 멸실 또는 손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입자는 물품의 인수거부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sup>46)47)</sup>

먼저 헤이그 규칙(Hague rule)에서는 “포장의 불충분성이나 화인의 불충분성 또는 부적당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 제정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규칙인 로테르담 규칙(The Rotterdam Rules)에서도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포장 또는 표시의 부적합이나 하자에 대해서 운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8)</sup> 이는 포장이나 화인의 부적합 또는 불충분에 기인한 멸실 또는 손실에 관하여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하고 이 경우에 그 책임을 송화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이 적용될 경우에 송화인은 운송에 적합한 포장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 혹은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에 컨테이너 적입작업이나 트레일러에의 적재작업을 송화인이 수행하는 경우에 송화인은 화물이 예정된 항해를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적부 할 의무를 부담한다.<sup>49)50)</sup> 이는 헤이그 규칙을 비롯한 국제운송규칙

나 수입자나 화물의 안정성이나 편리성보다 더 이것을 고려하면 안된다. 갑판에 적재하기를 합의하였다면, 생각하건대, 물품이 컨테이너에 있지 않다면, 물품이 적재하기 위해서 더 강한 포장이 필요할 것이다(Leo D'arcy, M. A., Schmitthoef's Export Trade, 10TH, London Sweet & Maxwell, 200, p. 128).

44) 조영철, 전계논문 p. 10.

45) CISG, Art. 38(3).

46) Leo D'arcy, M. A., Schmitthoef's Export Trade, 10TH, London Sweet & Maxwell, 200, p. 128.

47) 왜냐하면 수입자는 자신이 요청하거나 또는 무역관습에 따라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48) Rotterdam Rules, Art. 17(k).

49) 송화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제17조에 규정된 운송인의 책임의 경우와 달리 운송인은 송화인이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오원

의 일반론에서 함부르크 규칙은 포장이나 화인에 관한 송화인의 책임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3. 보험법 규정에 따른 포장의 계약적합성

최근에 개정된 2009년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2009(이하 ICC 2009라고 한다.)<sup>51)</sup><sup>52)</sup> (A)의 제4조 일반면책약관 제4조 3항의 규정에서 보험자의 면책은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절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이다. 그러한 포장 또는 준비가 피보험자 또는 사용인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이 보험의 개시 전에 실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서 포장의 의미는 컨테이너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고, 사용인에는 독립계약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3)</sup><sup>54)</sup>

이는 피보험자나 그 사용인이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포장으로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에 관해서 보험자가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피보험자나 사용인은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포장은 컨테이너에 적부를 포함하고 불완전 또는 부적합의 판단기준으로 포장 또는 준비가 부보 된 항해기간 동안 화물의 안전한 운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운송 중 통상 발생하는 사고를 견디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5)</sup><sup>56)</sup>

---

석·양정호, 국제운송물류론, 탐복스, 2011, p. 366).

50) 참고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에서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및 인도지연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단, 그 원인이 화주의 고의 또는 과실, 포장의 불충분, 화주의 잘못된 지시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장화물의 하자에 대하여 로테르담규칙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51) 본 논문에서는 포장의 계약적합성 관련 보험법 규정은 최근에 개정된 ICC 2009과 항공화물보험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52) 1982 협회적합약관 도입 후 보험시장의 주변상황과 무역화물에 대한 무역실무관행의 변화와 테러자금의 위협과 다양한 해상사기와 도난사건 등 보험자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의 변화에 따라 2009년 1월 1일자로 협회적화약관이 개정되었다(상계서, p. 432).

53) ICC 2009는 ICC 1982과 비교하여 포장의 불충분에 관한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축소하여 피보험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54) 권오,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09, p. 340.

항공화물보험<sup>57)</sup>의 협회항공화물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Air)] 은 포괄 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ICC(A)나 ICC(A/R) 약관과 동일하고 약관의 내용과 구성이나 그 태도도 유사하다. 본 약관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외부적 위험을 담보하며 ICC(A)조건과 동일하게 일반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통상적인 누손, 포장의 불충분, 화물고유의 하자, 지연, 항공이 운항자의 과산, 원자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및 운송용구 등의 부적합성 면책약관을 두고 있으며,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sup>58)</sup>

항공화물보험은 물품의 고유의 하자뿐만 아니라 포장의 불충분이나 운송용구 등의 부적합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는 항공운송보험도 해상운송보험과 포장의 하자에 관하여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IV. 계약적합성 측면에서 포장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본 장에서는 매도인인 수출자가 계약에 적합한 포장을 수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을 명시적 유의점, 묵시적 유의점 및 실무상 유의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명시적 유의점

###### 1) 포장의 라벨표시

수입국의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수출자의 계약이행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59)</sup> 따라서 수출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수입국가의 통관규정을 비롯한

55) ICC 2009 Clause 4.3

56) ICC 2009(A)의 면책약관과 ICC 2009(B)와 ICC(C)의 면책약관의 차이점은

57) 항공화물보험은 협회항공화물약관 [Institute Cargo Clause(Air)] , 협회전쟁약관 [Institute War Clause(Air Cargo) ] , 협회동맹파업약관 [Institute Strike Clause(Air Cargo)] 의 세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58) 오원석·양정호, 전계서 p. 448.

수입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완벽하게 입수하여 사소한 문제로 기인하여 클레임에 빠지는 실수는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편익 증대와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포장에 설명서나 라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규정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특히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거래물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성분 등에 관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라벨작성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항목은 개별 물품의 특성과 구성, 제조자와 원산지, 유통기한과 사용방법, 물품규격, 제법, 생산과정 등록 표시, 유통기한과 사용방법, 수입자 명칭, 주소 정보 라벨과 설명서의 공식 언어 등이다.<sup>60)</sup>

일반적으로 라벨의 표시는 통관과정에서 라벨의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제조자나 수입 물품에 관한 특성, 수량, 단위 등의 기본정보를 완전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수입국에서는 수입통관시 포장의 외장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sup>61)</sup>

라벨의 인쇄 또는 표시 방법은 물품 포장의 크기가 다양해질수록 라벨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적용되는데 특히 소비재의 경우에 이러한 요구가 높아 계획, 생산, 재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벌크화물이나 산업원자재 등의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포장으로 특정되기 전까지 특별한 라벨표시 없이 기본정보만을 표시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래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제조, 생산, 가공 과정에서 적용되는 물품의

59) 우리나라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외무역법을 두고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통합고시, 원산지관리제도 등의 규정을 두고 수출입의 제반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60) 수입국가의 표준 공용어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 공식 언어로 식별가능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까다로운 측면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매도인이 수출하는 물품의 설명서나 라벨을 하나의 용지에 영어 이외에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독일어, 일어, 중국어 등 여러 개의 언어로 동시에 인쇄한 표준 설명서 방식을 채택하는 매도인도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6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성분을 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품목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마다 사전에 당해 내용을 사전에 인증 또는 승인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동일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수입국 정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후 선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로부터 클레임을 당하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라벨의 샘플을 수입자 또는 현지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그 번역 결과물에 대한 적합성과 수용여부를 요청하여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 후 인쇄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위험물품 표시

전 세계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일반적으로 통관과정에서 세관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위험물품(dangerous goods)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품인 경우 반드시 '위험물품'임을 고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중심이 되는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였다<sup>62)</sup>

AEO 적용대상에는 제조자,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중계인, 항구 및 공항,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합인증 우수업체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sup>63)</sup>

위험물품은 온도의 변화, 충격, 진동 등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상태가 되므로 계약당사자는 운송계약 체결시 제품의 특성에 따라 폭발물, 화학물품, 가스, 화염성, 방사능물질 여부를 사전에 위험물품임을 충실히 고지하고, 적법할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송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운송물품이 다른 운송물품을 오염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과 장비로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은 이러한 위험에

62) AEO는 각 나라의 세관당국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물품검사 생략, 축소 등의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 이로 인한 통관시간 단축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크다. 미국의 경우 AEO물품의 통관검사비용이 AEO가 아닌 물품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63) 관세청고시 제2009-11호

대비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운송과 환적 과정에도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각 국의 통관 당국이나 각 운송업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다.<sup>64)</sup>

요컨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포장은 각 단계별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여 물품의 포장, 운송, 보관, 선적과 양하 등의 과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목시적 유의점

국제 물품운송은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도로, 철도, 해상, 항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어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운송, 보관 등 물리적 안정성(physical suitability)과 제반환경 요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상태로 포장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당사자는 계약과정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특약이나 현지 시장에서의 수용요건을 충분히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포장 내용을 포장 사전, 사후 과정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포장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입상의 명칭, 주소, 거래물품의 중량, 개수, 가격, 선적방법 등 특정요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포장관습이 존재한다면 그 관습에 따라 포장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sup>65)</sup>

그러므로 포장조건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포장만을 의미하므로 포장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

---

64)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위험물은 위험물검사소의 검사를 받고 수출면허를 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인천의 경우 인천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증가하여 위험물검사는 검사일기준 3일전에 위험물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화학물질 등 안전규정(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라고도 한다.

65) Incoterms® 2000 Rules, A9.



여야 한다.

### 3. 실무상 포장화물 관리의 유의점

수출물품이 팔레트나 컨테이너 등으로 단위포장 된 경우 운임과 THC 부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화물의 개수, 중량과 규격은 운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므로 포장단계에서 최대한 운임을 절감할 수 있는 포장방법을 선택하게 된다.<sup>66)</sup>

기본적으로는 운송방법에 따라 그 포장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작고 가벼울수록 운임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무사고 선화증권(clean B/L)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인수한 화물은 외관상 포장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sup>67)</sup> FCL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부지약관(unknown clause)을 운송서류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68)</sup>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제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다루기 쉽도록 포장화물의 크기, 편의성, 화물취급 요령표시, 화물의 내용물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1) 포장화물 취급의 편리성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은 운송과정과 유통과정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량물의 경우에는 포장/운반용 기계를 사용한다.

물품의 포장은 기계의 도움 없이 쉽게 처리하기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쉽게 운반하기 어려운 크기와 무게의 포장물도 있다. 크기가 큰 화물일수록

66) THC 부담에 관한 일반원칙은 개정 Incoterms® 2000 규칙에 따라 기본운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것이 클레임을 예방하는 방편이 된다.

67) 무사고 선화증권은 화물이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아무런 단서나 유보문언 없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다(오원석·양정호, 전거서 p. 302).

68) 부지약관은 컨테이너 운송시 운송인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알지 못한다는 약관이다. 예컨대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to contain"이라고 기재한다.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이,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은 화물의 확인, 수량, 용적 또는 용적 또는 중량이 실제로 수령한 화물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의심할 만 정당한 근거가 있거나, 또는 이를 검사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이를 기재하거나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Hague Rules 3(3)).

손잡이 위치를 적절히 배치하여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골판지 상자화물의 장점은 쉽게 운반이 가능하고 적절한 높이로 튼튼히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무적으로 액체류를 25리터 드럼으로 포장한다면, 고체물 역시 비슷한 중량과 크기로 포장하여 국내 또는 현지에서의 창고 물류 작업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 화물의 포장크기에 따라 운반, 관리방법이 결정될 뿐 아니라 물류에서도 관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2) 포장내용물과 취급주의에 관한 분명한 표시

수출자는 객관적으로 포장화물 자체만으로도 물품의 명칭, 도착항, 수량, 원산지 등과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화물은 그 취급과정에서 물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적합하고 분명한 처리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위험물의 경우에는 상하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습기나 충격으로부터 절대 보호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급주의 표시는 문자와 그림으로 최대한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방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V. 결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은 물품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도 계약 적합성을 갖춘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계약에서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포장이 운송 중이나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이다.

매수인은 자신이 요청하거나 또는 무역관습에 따라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포장은 수입국 국가의 현행 법규에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일부국가에서는 특정형태의 포장을 금지, 제한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포장형태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컨대 일부국가의 경우 유리용기나, 금속시트 등이 해당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포장에 관하여 물품의 조달, 공급은 물론 수출을 위한 준비단계와 운송 중 물품의 위험관리 그리고 기타 수출입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른 무역의 이행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상존한다.

무역이행과정에서 물품포장은 기본적으로 물품의 보관 또는 환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거래목적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상품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수입자 입장에서 포장은 유통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고려하여 포장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포장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포장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수출물품은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 손상 없이 상품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포장은 수출지 또는 수입지 정부의 각종 규정과 절차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제 운송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포장은 수입자 입장에서 디자인을 비롯한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포장에 관한 특약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시점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포장은 보관, 운송, 배송 등 모든 과정에 적합한 방법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계약의 포장적합성 의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클레임요건이 될 뿐 아니라, 국제규칙상 운송인의 면책요건을 구성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거절요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약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매도인은 명시적, 묵시적 그리고 국제규칙상 포장의 계약적합성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경제법연구, 제10권 1호, 2010.
- 권 오,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09.
- 서정두, INCOTERMS® 2010, 청목출판사, 2011.
- 오원석 譯,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 오원석·양정호, 국제운송물류, 탐북스, 2011.
- 오원석·이병문,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 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2008.
-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삼영사, 2011.
- 이시환·김광수 공저, INCOTERMS® 2010, 두남, 2011.
- 이우영·이양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4권, 2009.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존호놀드 저,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 조영철, “무역물품의 계약적합성과 물품인도와 관련된 수출상의 의무에 관한 고찰”, 복지행정연구, 제20권, 2004.
- 허광욱,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5호, 2005.
- ICC, 「INCOTERMS® 2010」, ICC, 2011.
-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Leo D'arcy, M. A., Schmitthoef's Export Trade, 10TH, London Sweet & Maxwell, 2000.
- 국내 및 국제 규칙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청고시

Hague Rules

Institute Cargo Clause 1982

Institute Cargo Clause 2009

The Sale of Goods Act 1979

Uniform Commercial Code

UN통일매매법(CISG)

Rotterdam Rules

## ABSTRACT

### A Study on Conformity of Packing in International Sales of Contract

Kim, Jae Seong

Park, Se Hun

Seller shall deliver the goods with a perfect condition of packing or container in international trade. Unless otherwise seller shall warranty that the goods arrive at destination with a safe and economic value.

Buyer may ask packing is to be made in specific condition or refuse to accept when the packing is not made in accordance with trade customs between among merchants. Especially packing is to be considered under the local law and process. Sometimes tax will be added to specific condition of packing for example glasses, metal sheet or others.

Warning signs shall be included as form of both words and diagrams, and be in form of ensuring understanding in the local market. Wide range of warning signs can be used for communications and understanding of packing.

Packing of a product can usefully symbolize a range of product information, or any relevant warnings, and give an opportunity for displaying messages of promoting the company and the goods.

The seller may choose the best method to maintain its value but find a way to reduce packing cost, size for convenience during delivery, design, and local customs. There are many things to be considered for packing to seller. The purpose of packing is to protect the goods itself and to maintain its economic value during storage, delivery, transshipment, and distribution to end users.

Key Words : Conformity of Packing, Seller' Obligation, Packing Terms